

게르만법에 있어서 씨족¹⁾

Karl Kroeschell*, 尹喆洪 譯**

1592년 어느날 헤센의 소도시인 Werra소계의 알렌도르프(Allendorf)에서 유혈의 결투가 발생하였다.²⁾ 이 결투의 양당사자 중 한사람은 날뿔이꾼(Tagelöner)인 Barthold Niede이었으며, 다른 한사람은 명문 세습귀족가문의 구성원이며, 그 도시의 市長 아들인 Herman Iring이었다. 이 결투는 Berthold Niede가 Herman Iring에 의해서 찢려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방치되는 상태로서 끝이 났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들은 유화적인 분위기였다. Niede의 시체에는 수많은 찢린 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죽음에 이른 찢림이 Iring으로부터 기인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밖에도 사람들은 Iring이 더이상 죄(Sinn)를 지은 상태로 있어서 안된다고 용서해 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해골에 관한 주석조끼를 통해 호되게 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당사자의 친척관계(Freundschaft)에서 하나의 和解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Hermann Iring은 살해된 자의 미망인과 그의 자식들에게 현금으로 100 Gulden, 11/2 Malter 보리, 4 Metzen의 완두와 5 Pfund 돼지비계살을 보상해야만 하였다. 이것을 통해 미망인과 그 친척들의 형사상의 소추는 부정되었다.

* K. Kroeschell교수는 현재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대학 민법 및 법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현재 활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르만법학자(Germanist) 중의 한 사람으로, 주 저서로는 도시법(Weibild), 독일법사(Deutsche Rechtsgeschichte I. II. III), 농업법(Landwirtschaftliches Recht) 등이 있다.

** 광운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1) 원래 이 논문은 필자가 1959년 1월 29일에 독일의 브라이스가우(Breisgau)의 소재 프라이부르크대학교(Albert-Ludwigs-Universität)에서 취임강의(Antrittsvorlesung)로 행한 것이다. 당시에는 강연회 형식으로 이루어졌었다. 따라서 사료와 문헌들에 대한 각주들은 후에 보완한 것이다.

2) A. Reccius, Geschichte der Stadt Allendorf in den Soden, 1930, S.76.

양당사자상에 있어서 하나의 큰 親戚圈이 이 和解契約에서 명확하게 나뉘어졌다. 加害者인 Iring의 측에서는 4개의 姓(Familiennamen)으로부터 대행자가 나타났고, 被害者인 날뎀팔이의 측에서는 10개의 姓으로부터 대행자가 나타났다.³⁾

이러한 사건의 진행과정은 郷土史家 혹은 家族史家(Lokal- oder Familienhistoriker)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法史家들에게도 특별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준다. 古代의 법형상들은 이러한 것에서 나타났다. 살해자와 살해된 자의 씨족들은 서로 반대의 입장에 놓여 있으며, 그들 사이의 평화는 우선 살해자가 고대의 인명금(Wergeld)으로 비교될 수 있는 살해 배상금(Totschlagsbuße)을 지급함을 통하여 복원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敵對인 씨족들이 다시 서로 화해하게 된다.⁴⁾ 그래서 1592년의 이 보고는 게르만의 씨족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이며, 우리의 사고가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관찰되어 왔던 변화 가운데서 주장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思考에 아주 잘 부합되는 것이었다.⁵⁾

씨족은 그것의 기운에 따라 父系에 있어서 선조로부터 유래한 姓으로서 효력이 있다.⁶⁾ 따라서 母系의 친족들은 결국 후퇴되어지고, 父系의 친족들이 이러한 핵심, 즉 확립되어진 씨족에 존재하였다. 그래서 결국 부계의 씨족으로부터 변화되는 親族圈(Verwandtenkreis)이 개개의 사람들을 위해 달리 묘사될 수 있는 親族圈으로 형성되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최소한 그것의 핵심 속에서, 즉 하나의 확립된 단체 속에서 씨족재산의 보유자로서 하나의 씨족의 지도자(Sippenführer) 혹은 씨족의 최연장자(Si-

3) 이들 가운데에는 유명한 필자의 선조인 Christian Kroeschell도 있음을 보여준다.

4) 이러한 분명한 방법에서 Reccuius 역시 진행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5) 오늘날 이러한 법사적인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 H. Conrad, Deutsche Rechtsgeschichte Bd. I, 1954, S.23f., 47ff.; H.Mitteis, Deutsche Rechtsgeschichte, 6.Aufl., bearb., v.H.Lieberich, 1960, S.10f.

6) Conrad, S.47; Mitteis, S.10; Cl. Frh. v.Schwerin, Grundzüge der deutschen Rechtsgeschichte, 4.Aufl., besorgt v. H. Thieme, 1950, S.18.

7) Mitteis, S.10; v.Schwerin, S.18. Conrad, S.50f.에서 변화 가능한 씨족을 위해 “혈족”(Blutverwandschaft) 혹은 “친족”(Magschaft)의 특징을 지적하였다.

ppenältest)에 의해서 인도되어져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⁸⁾ 씨족의 최연장자나 씨족의회(Sippenrat)는 개개의 구성원들에 대해 씨족의 형법(Sippenstrafrecht)을 행사할 수 있었다.⁹⁾ 씨족은 未成年者에 대하여 後見人의 역할을 하였으며,¹⁰⁾ 상속재산은 오직 씨족의 구성원에게만 귀속되었다.¹¹⁾

그러나 씨족은 대외적으로는 법률상의 단체로서 나타났다. 씨족의 구성원의 침해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씨족은 私鬪(Fehde)를 수행하며, 혈수(Blutrache)를 받아들이기도 하였다.¹²⁾ 씨족들은 서로 벌금(Bußgeld)을 징수하였으며, 소송에 있어서도 宣誓의 補助(Eidhilfe)와 保證(Burgerschaft)을 담당하였다.¹³⁾ 그러나 씨족은 동시에 定住의 團體(Siedlungsverband)로서도 존재하였었다.¹⁴⁾ 전체 장소에 대해 그의 이름을 부과해 놓은 씨족의 최고 연장자의 땅 주위에서 씨족의 다른 구성원들은 그 지방의 이름하에 정주하였었다.¹⁵⁾ 이러한 씨족의 정주 가운데 개별 소유권의 형성에 의하여, 씨족의 고대 경제단체가 그 안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마르크공동체(Markgenossens-

8) 이러한 견해는 Mitteis와 v. Schwerin에 의해 확실히 분리되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Conrad, S.49를 참조할 것.

9) Conrad, S.49,65f. ; Mitteis, S.11 ; v.Schwerin, S.18.

10) 씨족의 총체적인 후견제도(Gesamtvormundschaft)에 대하여는, v. Schwerin, S. 19 ; Conrad, S.49 ; Mitteis, S.11(여기에는 주로 후견인의 감독에 관한 것이다).

11) Mitteis, S.11. 이에 대하여 Conrad, S.49는 家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시정하였다.

12) v. Schwerin, S.19f. ; Conrad, S.49 ; Mitteis, S.11.

13) v. Schwerin, S.19 ; Conrad S.49 ; Mitteis, S.11.

14) 그래서 우선적으로 Conrad, S.49를 참조할 것. 이에 대해 단지 v. Schwerin, S.19에서는 씨족이 정주단체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 Mitteis는 1949년 제1판 8면에서 씨족을 아직 정주공동체와 농업의 생산공동체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1954년 제3판 이후부터 증보자인 H. Lieberich는 11면에서 씨족은 그 특성상 “로마제국의 영토상에서 정착하던 그 시대에 이미 지배권적인 사회조직을 통해 강요되어” 존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15) Vgl. etwa R.v.Kienle, Germanische Gesellschaftsformen, 1939, S.108ff

chaft)가 성장하였다.¹⁶⁾ 결국 씨족은 군대단위(Heeresinheit)로서도 효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게르만인의 군대를 제한된 전투능력이 있는 씨족으로부터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¹⁷⁾

그래서 씨족의 영역 밖에서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는 명백히 존재하지 않았다. 씨족은 개개인들에게 하나의 승인되고 보호되는 법률상의 지위를 조정할 수 있었다. 씨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생활이나 법률상의 생활에 관여할 수 없었다.¹⁸⁾ 우리시대의 한 憲法史家は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씨족의 영역 밖에서 있는 사람은 실제로 개개의 정치적인 권리에 있어서는 不自由人으로서, 인간으로서보다도 오히려 이리로서 존재한다.”¹⁹⁾ 이러한 형태 속에서 씨족에 관한 法理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확립되어졌다.²⁰⁾ 이 法理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며, 일반적인 효력을 더욱 활기 있게 하였다. 그들 개개의 의견들을 검증 없이 채택하는 것은 확실히 거의 허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거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반대의 학술적인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적인 견해에 대해 개관해 보자.

父系의 한 선조(Stammvater)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부계의 종족단체(agnatischer Geschlechtsverband)가 가족구성(Familienaufbau)의 가장 오래된 형태일 것이

16) Conrad, S.19 ; Mitteis, 1.Auf., S.10. 물론 여기서 H.Lieberich는 나중판들에서는 철저하게 현대화되어졌으며, 마르크공동체에 관한 법리를 포기하였다.

17) v. Schwerin, S.19,25 ; Conrad, S.33f.,49 ; Mitteis, S.11.

18) 그 때문에 씨족은 문헌 속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오래된 “평화의 단체”로서 간주되어졌다. 이에 대해 v. Schwerin, S.19 ; Conrad, S.47를 참조할 것.

19) W. Schlesinger, Verfassungsgeschichte und Landesgeschichte, in : Hess. Jahrbuch f. Landesgeschichte 3, 1953, S.3.

20) 씨족에 관한 법리의 계속적인 유효성의 증거로서 다음에 잘 언급되어 있다. H. Brunner, Deutsche Rechtsgeschichte, Bd. I, 2. Aufl., 1913, S.110ff. ; K. v. Amira, Grundriß des germanischen Rechts, 3.Aufl., 1913, S.169ff. ; Rietschel, Art. Sippe, in : Reallexikon der germanischen Altertumskunde, hg. v. J. Hoops, Bd.4, 1918/19, S.181ff. ; F. Genzmer, in Germanische Altertumskunde, hg. v. H. Schneider, 1938, S.126ff. 그리고 오늘날의 문헌에 대해서는 주5)를 참조할 것.

라는 견해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다. 중세의 독일 귀족에 있어서 종족단체는 뚜렷한 조상으로부터 전래내려 온 저택과 가족의 묘지의 보유와 관련하여,²¹⁾ 우선 명백한 것만도 대략 1100개에 이른다. 비록 오래 전에 조상에 대한 의식(Ahnenbewußtsein)과 조상에 대한 자부심(Ahnenstolz)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父系(Mannesstamm)의 조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상 뛰어난 조상에 관한 것으로, 母系の 차원에 있어서도 가능한 것이다.²²⁾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조상으로서, 그리고 성스러운 寄與者(Heilspender)로서 순수한 傍系血族(Seitenverwandte)은 자주 충분하게 이 점에 대해 답변되어졌다.²³⁾ Edda 혹은 아이슬랜드의 Saga의 계보 역시 변화가능한 親族群의 많은 수에 의하여 관철되었다.²⁴⁾ 父系の 의미에 있어서 하나의 種族(Geschlecht)에 대한 종속성의식은 여기서 매우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식은 중세 초기 동안에 점진적으로 명백하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동등한 것은 아니었다. 만약 하나의 지도적인 사회계층이 몰락되어지고, 종속의 정확한 확립이 중요하게 되어질 때에, 대부분 조직

21)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되어졌다. K. Schmid, Zur Problematik von Familie, Sippe und Geschlecht, Haus und Dynastie beim mittelalterlichen Adel, in : Z.F.d. Gesch. d. Oberrheins 105, NF.66, 1957, S.1-62 : vgl. aber auch J. Fleckenstein, Über die Herkunft der Welfen und ihre Anfänge in Süddeutschland, in : Studien und Vorarbeiten zur Geschichte des großfränkischen und frühdeutschen Adels(Forschungen zur oberrhein. Landesgesch.IV, 1957), S.108ff. Dazu G.Tellenbach, Zur Bedeutung der Personenforschung für die Erkenntnis des früheren Mittelalters(Freiburger Universitätsreden NF.25, 1957), S.17ff.

22) K. Hauck, Haus- und sippengebundenen Literatur mittelalterlicher Adelsgeschlechter, in : MIOG.62, 1954, S.126, spricht vom "Spitzenahn". Zustimmens Schmid, S.24 : Fleckenstein, S.111. 가족의식의 유사한 구조는 중세후기의 세습귀족의 가정의 경우에서 발견된다. 이에 대해 Gerd Wunder, "Pfintzing die Alten", in : Mitt.d. Verff. Gesch.d. Stadt Nürnberg, Bd.49, 1959, S.34ff., bes. S.56을 참조할 것.

23) Wilhelm Grönbech, Kultur und Religion der Germanen, Bd.I, 5.Aufl., 1954, S.358 f에서 자세히 언급되었다.

24) Grönbech는 376면에서 Ottar의 "Genealogie"에 대한 재판에 대해 확실히 종결하였다.

되어진 종족들은 부계적으로 발생한 것이다.²⁵⁾ 그래서 디트마르셴(Dithmarschen)의 영향력있는 농민 종족체는 계속 유지된 게르만의 씨족은 아니었다.²⁶⁾ 오히려 그들은 가장 먼저 약 1000년경에 성립되었으며, 그들의 指導下에서 堤防을 쌓는 큰 일을 수행해냈으며, 정복한 습지에 정착하게 되었다.²⁷⁾

씨족의 長(Sippenhaupt)과 氏族世襲財産(Sippenstammgut) 및 고유한 씨족의 형법(Sippenstrafrecht)에 관한 이러한 관념들은 어떠한 집안에서 家父(Hausvater)가 하나의 지배적인 지위를 향유하는 집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경우에도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반대견해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씨족에 대한 생소한 것이었다. 즉 씨족은 지배권(Herrschaft)에 대해 알지 못했다.²⁸⁾ 맞아 죽은 자의 친족들에게 人命金을 분배해 주는 경우에 父系(Mannesstamm)가 거의 특권을 향수하지

25) Bertha S. Phillpotts(Kindred and Clan in the Middle Ages and After, 1913, S.269)는 무엇보다도 한 나라가 종속된 경우에 저항하는 지배계층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전형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26) 이러한 확고한 지위에 씨족의 법리에 관한 가장 주요하고, 회귀 가능한 증거의 하나가 있게 된다.

27) 이것은 H. Stoob의 Die dithmarsischen Geschlechtsverbände. Grundfragen der Siedlung-und Rechtsgeschichte in Nordseemarschen(1951)라는 책의 테제이다. 이에 대해 이 책의 118면에 잘 요약되어 있다.

28) 씨족의 長 혹은 씨족의 지도자의 개념에 대해 명백한 반론이 다음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H.Dannenbauer, Adel,Burg und Herrschaft beiden Germanen, Wiederabdruck in : Herrschaft und Staat im Mittelalter(Wege der Forschung II, 1956), S.106, Anm.95. 또한 F. Beyerle는 Ortsnamen der Landnahmezeit und karolingische personennamen als sonziageschichtlicher Anschauungstoff, in : Festschrift f. Karl Haff, 1950, S.21에서 씨족 원로의회를 설명하였다. 왜냐하면 명령권(Befehlsgewalt)은 단지 家를 알고 있을 뿐이다. 또한 씨족은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W. Schlesinger는 그 자신의 Herrschaft und Gefolgschaft in der germanisch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Wiederabdruck in : Herrschaft und Staat im Mittelalter (Wege der Forschung II, 1956), S.142에서 家權(Hausgewalt)은 씨족의 범주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였다.

못한다는 것은 이러한 관념에 잘 부합하는 것이었다.²⁹⁾ 그러나 노르웨이나 디트마르센 등, 이같은 것이 있는 곳에서는 중세적인 사료들과 관련된 것이다.³⁰⁾ 그러나 영국에서는 어떻게 父系의 首長이 후천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증명되어졌다.³¹⁾ 이 점은 친족들이 그러한 벌금에 대해 처음부터 철저하게 혹은 필요에 따라 분배하지 않은 경우에 분명하게 나타났을 것이다.³²⁾

벌금지급의 인수를 위해 유효한 것은, 그것의 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주 언급되어지는 렉스 살리카(Lex Salica)의 표어는 행위자가 재산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경우에 그의 친족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³³⁾ 앵글로 색슨의 법에 있어서도 역시 벌금을 징수해야 하는 행위자가 먼저 스스로 그것을 담당한다. 만약 그가 추방자로서 국외로 도망간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의 친족에게로 귀속된다. 그러나 단지 罰金債務의 일부만을 부담하게 된다.³⁴⁾ 따라서 친족에 관한 큰 범위는 우선 中世盛期(Hochmittelalter)의 초기에 주목을 받았었다.³⁵⁾

따라서 父系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親族全體가 人命金의 지급이나 人命金의 수령에 대해 우선 2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序頭에서 언급하였던 1592년의 和解契約(Sühne-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상이한 확정속에서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예컨대 렉스 살리카(Lex Salica)에 대하여, H. Brunner, Sippe und Wergeld nach niederdeutschen Rechten, in : ZRG. 1882, S.1-87.

30) 최고로 1100년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노르웨이의 사료들에 대하여는, vgl. B. S. Phillpotts, S.47ff. Ebd., S.125ff. 디트마르센에 관해서와, 디트마르센에 있어서 부계종족의 후기 성립에 관하여는, Vgl..Stoob(주27), S.71ff., 88ff.

31) B. S. Phillpotts, S.205ff.

32) Ebd., S.207.

33) Pact. Leg. Sal. 58, De chrencreuda. 친족의 책임의 아주 분명히 하나의 부수적인 것일 뿐이었다. H. Brunner, Sippe und Wergeld, S.37ff. 참조.

34) Vgl. B. S. Phillpotts, S. 205f. zu Aethelberht c.23 und Aelfred c.27.

35) 친족, 즉 maego의 원시적이고 엄격한 확장에 관하여는, vgl. B. S. Phillpotts, S. 216ff., 243. 우선 덴마크의 영향을 받던 시대에 앵글로색슨의 법에 있어서는 화해계약에서 보증인에 관한 12수자는 친족권의 넓은 범위를 가리켰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의 사상재의 성립은 명백하다(ebd., S.225).

vertrag)의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의 고대 게르만의 법률제도(altgermanische Rechtseinrichtung)를 보유한 것인가의 여부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다. 私鬪權과 復讐權(Fehde- und Racherecht)의 원시적인 保有者로서 씨족에로의 모든 귀납적인 추론들은 매우 회의적인 것이다. -모두 다 그것으로부터 연유되어진 결과들이다.³⁶⁾ 같은 家門의 출신인 가까운 친척(Nächstverwandt)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支持가 증명되었다. 그러나 먼 친척들은 아일랜드의 Saga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私鬪에서는 자주 격렬하게 서로 싸웠다.³⁷⁾ 결국 선서의 협력자(Eideshelfer)에 대해 사료들은 또 다시 父系의 씨족의 구성원들 중에서만 채택한 것이 아니라, 父系나 母系の 친족이 상호 번갈아 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家에 관한 선서의 협력은 씨족의 과제로부터 기인되었음을 수용하는 것은 순수한 가설(Hypothese)로서 증명되었다.³⁸⁾

定住團體(Sidelungsverband)로서 씨족에 관한 이론은 거의 모든 곳에서 재기되어졌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씨족의 정주의 증거로서 간주하는 “-ing”과 “-ingen”상의 지명 가운데서 그들의 가장 확실한 근거를 찾았다.³⁹⁾ 그러나 어떠한 地名研究家(Ortsnamenforscher)도 오늘날에는 더이상 Gundelfingen의 마을속에서 Gundolf의 씨족이나, “Gundolfinge”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지명들은 이름 부여의 문제로서 이해되어지며, 정주를 위한 하나의 증거로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명은 최초의 정주자에

36) 오직 개개의 예를 보여 주기 위함이다. 살인자를 그의 집안에서 죽이는 살해된 자의 시체는 전체의 씨족에게 존재해야만 한다. 이것은 씨족이 이러한 모든 기능을 보유한 자로서 전제되어진 사람을 강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37) 이것은 F.Genzer에 의한 가장 강력한 주장 중의 하나이다. 그의, Die germanische Sippe als Rechtsbegriff, in : ZRG. Germ. Abt.67, 1950, S.46.

38) 낡은 견해로서, 예컨대, Brunner-v. Schwerin, Deutsche Rechtsgeschichte, Bd.II, 2.Aufl., 1928, S.513ff. 이에 대한 반대의 견해로 B.S.Phillotts이 언급한 여러 곳이 있다. Brunner-v. Schwerin, S.14, Anm.15 참조.

39) 이 견해는 W. Arnold에 의해 기초되고, 무엇보다도 Fürstemann-Jellinghaus의 Altdeutsches Namenbuch Bd.2, 1913, S.1567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유지되었다 ; vgl. z. B. noch K. Weller, Besiedlungsgeschichte Württembergs, 1938, S.52ff.

의해서와 마찬가지로 후대의 주인에 의해서도 기원될 수 있다.⁴⁰⁾ 씨족의 정주를 위한 다른 중요한 증거들은 존재하지 않았다.⁴¹⁾ 경제단체(Wirtschaftverband)로서 씨족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거대한 독일의 마을들은 그들의 蔘圃式의 耕作(Dreifeldwirtschaft)과 마르크공동체(Markgenossenschaft)를 통하여 게르만의 초기시대(Frühzeit)까지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中世盛期와 中世後期에 최초로 발생된 것이라는 인식은 오래전에

-
- 40) 이미 B. S. Phillpotts는 244면에서 거주지로서 -ingen- 장소이론이 F. Kluge의 논문, Sippensiedelungen und Sippennamen, in : Vjschr.f.Sozial-u.Wirtschafts-gesch. 6, 1908, S.73ff.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졌음을 믿었다. 이전의 경고에 관하여는 G. Waitz,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Bd.I, 3.Aufl., 1880, S.84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의 부여에 대한 불충분한 증거력에 관한 새로운 암시의 문헌 속에서는 필요하였다. vgl. A. Bauer, Gau und Grafschaft in Schwaben, 1927, S.119 ; A. Bach, Die deutschen Namen auf-ing in ihrer geschichtlichen und räumlichen Entwicklung, in : Rhein. Vierteljahrsblätter 10, 1940, S. 77ff. ; H. Dannenbauer, Adel, Burg und Herrschaft, a.a.O., S.122, 126 ; F. Langenbech, Untersuchungen über Wesen und Eigenart der Ortsnamen, in : Z.f.d. Gesch.d. Oberrheins 99, 1951, S.83 ; F. Beyerle, Ortsnamen der Landnahmezeit(unter Hinneigung zur Stammhoftheorie von V. Ernst) ; W. Schlesinger, Verfassungsgeschichte und Landesgeschichte, S.14, 이외에도 다수가 있다.
- 41) 바이에른지방의 경우에 “genealogiae”의 개념은 단순히 “씨족들”(Sippen)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힘있는 귀족의 종족에 의해 지배되는 지역과 함께 그러한 힘있는 종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잘 알려졌다. vgl. Dannenbauer, Adel, Burg und Herrschaft, a.a.O., S.120ff. 물론 genealogiae는 L. Alam. 81에서 다르게 존재한 것은 아니다. F. Beyerle의 결론은, Das Kulturporträt der beiden alaman-nischen Rechtstexte, in : Hegau, 1956, S.103에서, 따라서 “Sippe-Großmarken” 상에 아직도 불안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부르군드-랑고발드의 fara는 씨족이 아니라 운송공동체(Fahrtgenossenschaft)이다 ; F. Beyerle, Gesetze der Burgunden(Germanenrechte Bd.10, 1936),S.190.

관철된 것이다.⁴²⁾ 따라서 그것은 고대 씨족의 촌락공유지(Sippenmark)로부터 성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끝으로 군대단체(Heeresverband)로서 씨족의 의미 역시 많은 논의가 되어졌다.⁴³⁾ 확실한 父系의 씨족은 그러한 것을 위한 기초로서 아주 일치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다양한 강제력을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친족의 범위(Verwandtenkreis)는 크게 유용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여러 그룹에는 속할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2개 혹은 3개의 군대조직에는 동시에 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외에도 사료들은 씨족의 단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친족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이러한 비관적인 견해들을 수용한다면, 전통적인 씨족의 개념에 대해 논란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게르만 법에 있어서 씨족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논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개념이 오늘날 개념 속에 귀속되어져 있는 독일의 법사 속에서 담당해 왔던 역할에 대해서도 논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씨족개념의 시초를 Jakob Grimm의 “法の 古代學”(Rechtsaltertümer)이라는 저서 속에서 찾았다. 1829년의 제1판의 相續에 관한 章에서 씨족이라는 말은 “평화”(Frieden)라는 것과 같이 친족(Verwandschaft)을 의미한다고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였으며,⁴⁴⁾ Karl Friedrich Eichhorn는 자신의 “獨逸의 國家史와 法史”(Deutsche Staats- und Rechtsgeschichte)에서 言語上的 事實關係를 아주 상세히 언급하는 것을 제한하였었다.⁴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Jakob Grimm의 견해는 하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42) 이것은 여기서 마르크공동체의 원시 게르만적인 성격에 관한 이론이 중세 동안에 최초로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 반박이나 증명을 한 작가들의 종합적인 계열로서 설명될 수 없다. 비록 Conrad가 20면에서 몇 마디로서 부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은 이 새로운 견해가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에 대한 반대 견해로는, K. S. Bader, Das mittelalterliche Dorf als Friedens- und Rechtsbereich, 1957, S.4ff. ; Mitteis(주16), S.14를 참조할 것.

43) Vgl. F. Genzmer, Die germanische Sippe als Rechtsbegriff, S.37ff.

44) J. Grimm, Deutsche Rechtsalterthümer, 1.Aufl., 1829, S.467.

45) K. F. Eichhorn, Deutsche Staats- und Rechtsgeschichte, 5.Auflage, Bd.I, 1843, S.312 Anm.a.

浪漫主義(Romantik) 이래로 국가에 관한 법정책적인 사고는 國民과 國民性(Volk und Volkstum)에 노선을 바꾸는 것과⁴⁶⁾ 같은 방법에 있어서 독일법사의 문제제기는 변천되었다. 또다시 Jakob Grimm을 통해 그것을 구성하기 위하여, 그것은 “관례로서 국민으로부터 기인하며, 아직도 강하게 흔들리며, 지배자의 차원에서는 입법이 요구하지 아니하는 신선하고 자유로운 법에 관한 것이다.”⁴⁷⁾ 사람들이 씨족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私法의 영역을 씨족 스스로 국가 이전의 法律共同體와 平和의 共同體(vorstaatliche Rechtsgemeinschaft und Friedensgemeinschaft)에 속하는, 국가 이전의 법률영역이다. 19세기 중엽에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⁴⁸⁾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활기있고 다양한 사회가 합리적인 조직체로서의 국가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문제시하였다.⁴⁹⁾ 그래서 게르만 국가는 게르만 사회의 자신들의 강력한 왕들, 국민의 대표자들, 공무원들 그리고 판사들로서 대칭되었다.⁵⁰⁾

46) Vgl. dazu R. Smend, Politisches Erlebnis und Staatsdenken seit dem 18. Jahrhundert, in : Staatsrechtliche Abhandlungen 1955, S.350.

47) J. Grimm, Kleinere Schriften Bd.5, 1863, S.453f.

48) 우선적으로 참조할 것은, K. Maurer, Über angelsächsische Rechtsverhältnisse, in : Kritische Übersicht der deutschen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Bd.1, 1853. Maurer는 53면에서 평화공동체(Friedensgemeinschaft)로서 종족단체의 선국가적인 성격을 부각시켰으며, 그리고 61면에서는 게르만인의 “국가”(germanischer “Staat”)가 종족단체로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체도로부터 기인하였다는 것에 반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에 유사한 것으로 G. Waitz, a.a.O., 53ff. 또 최근에는 F. Genzmer(in : Germanische Altertumskunde, S.126ff.)가 “Vorstaatliche Zusammenschlüsse verwandtschaftlicher Art”라는 글에서 씨족을 다루고 있다.

49) 이러한 견해의 특성화에 대하여 vgl. H. Heller, Staatslehre, 1934, S. 109ff. ; G. Leibholz, Die Auflösung der liberalen Demokratie in Deutschland, 1933, S.44ff.

50)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농업이나 경제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사적인 서술에 있어서는 씨족을 게르만의 제도의 요소로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예를들면, v. Schwerin, S.18ff.), 확실히 국가이전의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O. Brunner, Moderner Verfassungsbegriff und mittelalterliche Verfassungsgeschichte, Wiederabdruck in : Herrschaft und Staat im Mittelalter (Wege der Forschung II, 1956), bes, S.7f.를 참조할 것.

이러한 자들로부터 유래한 씨족들은 오직 그들의 복지 위에, 전진하고 있는 국가에 대립되는 그들의 자기결정을 주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오직 사려깊고, 대담하며, 자족하며, 다감한 종족단체(Geschlechterverband)이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인위적인 목적을 위한 단순한 재산적인 의미에 있어서 회사(Gesellschaft)는 아니다.⁵¹⁾ 오히려 성장되어지고, 내적으로 결합되어진 공동체(Gemeinschaft)에 관한 서열은 그것들과는 반대에 속하는 것이다.⁵²⁾ 그들의 일치된 결합이나, 공동의 혈연은 그들의 뿌리를 불합리성에 까지 이르도록 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게르만 국가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말할 수 없는 게르만인의 본질로서 긴밀하게 결합되었다.

특수한 정신사적인 전제조건들이 도처에 명백한 사실로 존재하는 이러한 상황하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개의 경향을 통해 세기의 전환기에 씨족단체에 관한 고전적인 이론이 크게 성장하였다.⁵³⁾ 그것은 Grimm의 ‘법률의 고대학’(Rechtsaltertumer)의 제2차 全訂版에 추가되었으며,⁵⁴⁾ 그것의 완전한 표현은 Heinrich Brunner의 獨逸法史(Deutsche Rechtsgeschichte)에서 발견된다.⁵⁵⁾ 그 이후에는 개개의 경우에 이 이론이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주 의미있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Brunner에 대하여 씨족은 국민의 평화라는 넓은 법의 범위에서 확립되었으며,

51) 이러한 이익사회(Gesellschaft)의 개념을 (공동체의 반대로 : Gemeinschaft) F. Tönnies가 기초하였다. 그의,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1887. 이에 대하여는 Th. Geiger, Art. Gemeinschaft, in : Handwörterbuch der Soziologie, 1031, S.173ff. ; R. König, Art. Gemeinschaft, in : Soziologie (Fischer Lexikon, 1958), S.83ff.를 참조할 것.

52) 이러한 견해가 Grönbech의 경우에도 도처에서 발견된다. 특히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Bd. I, S.41이다. 그러나 F. Walter, Deutsche Rechtsgeschichte, 2.Aufl., 1857, Bd. I, S. 18f.도 참조할 것.

53) H. Zoepfl, Deutsche Rechtsgeschichte, 4.Aufl., 1872, Bd. II, S.2 ; Jon. Friedr. v.Schulte, Lehrbuch der deutschen Reichs- und Rechtsgeschichte, 3.Aufl., 1873, S.28ff.

54) 4.Aufl., besorgt von A. Heusler und R. Hübner, 1899, Bd. I, S.643.

55) Bd. I, 2.Aufl., 1906, S.110ff.

따라서 모든 권리의 유일한 조정자는 아니었다.⁵⁶⁾ 씨족의 혈연단체(Blutverband)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의 생활이나 법률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최근에는 점점 더 강력하게 제기되었다.⁵⁷⁾ 어느 누구도 그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인용해 본다면, 이 사람은 “실제로 개개의 정치적인 권리에 있어서는 不自由人(Unfreier)으로서, 인간으로서보다도 오히려 이리에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혈연단체의 밖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대에 이러한 전체의 법이론의 기초가 특수한 연구에 의해 무엇이든지 파괴되어 가는 동안, 씨족은 이 이론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⁵⁸⁾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발전이 오직 독일에서만 이러한 형태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더욱더 숙고를 요하는 하나의 독특한 갈등이 있게 된다. 그러한 같은 종족의 스위스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확실히 자제하고 있었다. Andreas Heusler의 견해를 우리 모두 경청해 보자⁵⁹⁾: “어찌되었던 한 시대에 평화의 공동체와 법률공동체(Friedens- und Rechtsgenossenschaft)로서 점차적으로 파괴되어져 가는(Gierke) 씨족이 하나의 집단적인 형태를 보유해 왔어야만 하는가의 여부는, 여기에서도 미결된 상태로 놓여 있으며, 나는 그것을 믿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한 증거가 먼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위해 인용되어졌던 모든 것들은 친족이 높은 권리들을 주었고, 후에는 엄격한 의무를 부가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고유 의미에서 있어서 법률공동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중략…인명금의 수령 혹은 지불과, 후년의 행사를 위하여 그들의 구성 안에서 가족 그 자체가 하나의 조직체는 아니다. 누군가 인명금을 수령

56) Brunner, ebd., S.131.

57) 앞의 주 18번을 참조할 것. 민족의 평화에 관한 법리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K. S. Bader 역시 증명하였다. 그의 Das mittelalt. Dorf, Bd.I, S.217.

58) 비록 정신사적인 배경들의 전체 모습이 그것을 통해 본질적으로 충족되어졌다 하더라도, 청년운동(Jugendbewegung)에 있어서 씨족개념의 소생에 관한 것과 국가사회주의의 법이데올로기에 있어서 그의 기능에 관해서는(예를 들면 세습농지법)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59) A. Heusl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Privatrechts, Bd. I, 1885, S.258ff.

하거나 지불한 경우나, 누군가 후견권을 행사한 경우에, 이러한 모든 것은 가족의 이름과 그 기관으로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족 즉 가족구성원으로서, 그러나 고유한 이름과 개인적인 권능으로서 순수하게 행한 것이다. 일족은 인명권을 취득한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며, 그가 가족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⁶⁰⁾. 전체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이러한 게르만법학자(Germanist)의 항변은 더욱 장려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독자적인 논문은 비록 앵글로색슨의 법률들이 현대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며, 다양한 근거로부터 특히 유용하게 나타나는 앵글로색슨의 법에 대해서는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것들은 매우 풍부하며, 오랜기간 동안 통용되었다. 따라서 그것의 발전 역시 대륙의 게르만 민중법의 범위내에서보다도 훨씬 명백한 것이었다. 또한 앵글로색슨인(Angelsachsen)들은 가까운 종족인 랑고발트인(Langobarden)들의 재능으로부터 전래되어진 중요한 법률적인 재능을 지녔다. 그들의 법률용어도 매우 잘 분화되었으며 정확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률들이 처음부터 게르만 언어에 잘 부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게르만의 법률제도는 라틴어의 보호하에서 출현된 것이 아니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사료들은 유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영국의 연구자의 견해들은 바로 이러한 씨족의 테마에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앵글로색슨의 법들이 씨족에 관한 법리를 위해 밝혀 놓은 모든 것들은 확실히 넓게 확산되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전체 집단의 핵심 속에 존재하는 개개의 문제가 논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씨족을 가지지 못한 者, 즉 씨족이 없는 사람의 法的地位(Rechtsstellung)에 관한 문제이다.⁶⁰⁾ 만약 주장되어진 기초적인 의미가 씨족에 귀속된다면, 그것은 씨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법률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60) 필자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은 1953/54년의 겨울학기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F. Beyerle와 H. Thieme의 독일법사의 세미나에 제출하였던 보고서에 로까지 소급한다. 당시 F. Beyerle에 의한 설명들이 출발점을 형성하였다. F. Beyerle, *Das Entwicklungsproblem im germanischen Rechtsgang*, Bd.I, 1915, S. 515ff.

존재이어야만 했다. 따라서 씨족단체의 지배적인 지위는 씨족에 속하지 않는 자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희생 속에 반영되어져야만 했었다.

앵글로색슨법이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앵글로색슨의 법률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수한 출판물들에 의해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Reinhold Schmid에 의해 1858년에 출간된 제2판이며,⁶¹⁾ 이것이 출판되어 있는 동안에 Felix Liebermann에 의해 다른 하나가 1903-1916년에 발간되어졌다.⁶²⁾ 이 수십년 동안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Schmid의 이 뛰어난 물건에 관한 주석서(Sachkommentar) 속에서 사람들은 씨족과 이 씨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을 무의하게 했기 때문이다.⁶³⁾ 그러나 이에 대해 Liebermann은 “Sippe”⁶⁴⁾라는 표제어하에 첫눈에 씨족의 법리를 완벽하게 고찰한 것으로 보이는 풍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앵글로색슨법이 정한 씨족에 속하지 않는 자에게서 사람들은 확실히 완전한 권리의 상실 속에서 모든 조건 밖에 존재하는 불행한 인간을 인정하고 있다. 확실히 사람들은 이러한 엄격한 조사에 대해 깜짝 놀랐다. 즉 그것은 Liebermann이 동일한 독일어의 개념인, “sippelos”로서 표현한 두 가지 앵글로 색슨의 법률용어이다. 그중 하나는 “maegleas”로 부르는 것으로, 胃도 위-

61) Die Gesetze der Angelsachsen, hg. v. Reinhold Schmid, 2.Aufl, 1858.

62) Die Gesetz der Angelsachsen, Bd.I-III, hg. v. Felix Liebermann, 1903-1916. 이러한 출판에 의해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료들이 인용되어진다. ; 물론 이렇게 수행되어진 번역들은 광범하게 Liebermann에 의존하였으며, 단지 magas 혹은 maego가 “Gesippen” 혹은 “Sippe”를 대신하여 “Verwandte” 혹은 “Verwandtschaft”로서 번역되어졌으며, 대체로 앵글로색슨의 자료들에 대한 긴밀성이 제고되어졌다. 따라서 필자는 자주 K. A. Eckhardt가, Leges Anglo-Saxonum(1958)에서 행한 번역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 번역 역시 때 경우 Liebermann에 잘 부합된다.

63) Schmid는 652면에서 ags. sib를 pax, cognatio와 cognatus의 의미와 그것의 결합을 통하여 나타내주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법사적인 이론의 “씨족”(Sippe)을 알지 못했다. 그는 標題語인 “Magenschaft”(S.625ff.)를 전래내려온 “Sippe”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628면에서 Sippe와는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친족범위의 법률적인 폐쇄성을 강조하고 있다.

64) Liebermann II, S.651ff.

친척도 없는 것이다(ohne Magen, ohne Verwandte). 이에 반해 두번째 용어는 “freondleas”으로, 문자상으로는 동무가 없는(freundlos) 것을 의미하였다.⁶⁵⁾ 이러한 두 가지의 표현에 대해 살펴 볼 때 우선 maegleas는 확실히 Sippelos의 개념으로부터 기인되었다.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의 용어 maego는 비록 친족(Verwandschaft)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씨족은 아니었다는 점을 확실히 염두해 두어야만 했다. 하나의 종족단체(Geschlechtsverband)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친족의 범위이다. 영국의 연구가 확실하게 제기했던 것과 같이 대부분은 오직 家(Haus)로서, 엄격한 가족단위(Familieneinheit)인 것이다.⁶⁶⁾ 이것은 중요한 차이이다. 왜냐하면 현대 유럽인인 우리들은 확실한 친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씨족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maegleas라는 말을 바로 sippelos로 번역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씨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친족이 없는 자는 씨족없이도 존재해야만 했다. 따라서 그는 선서보조자(Eidhelfer)나 보증인(Bürgen)을 訴訟時에 보호해야만 했으며, 또한 어떠한 지원도 없이 私鬪을 행하거나, 살인배상금(Totschlagbußen)을 징수해야 했다. 비록 그가 살해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보상도 없이 방치되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살해자를 소추하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인명금을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앵글로색슨의 법률들이 모두 이러한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것은 반대이다! 인명금의 경우에 古代에는 친족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601-604년에 Kent지방의 아에텔베르트(Aethelberht)왕의 법률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친족에 관한 從屬的인 責任은 인명금의 일부분에 대하여 초기부터 서서히 관찰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살해자가 국외로 추

65) Liebermann II, S.81(freondleas), 138(moegleas) und vor allem 651ff.(Sippe).

66) B. S. Phillpotts, S.216ff.

방되는 것이었다.⁶⁷⁾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그는 평균의 인명금 : 100 Schillinge를 지급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그는 葬禮의 경우에 20 Schillinge를 지급하고, 또한 40일 밤을 전체 인명금(Leutegeld)을 지급한다.

만약 살인자가 국외로 도망한 때에는, 그 친척들이 인명금 절반을 지급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그는 자신의 고유한 재산과 기타의 하자 없는 동산으로 지급한다.

만약 친족들이 매우 소수인 때에는, 후에 이외에도 같은 정도에서 길드의 조합원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만약 친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길드의 조합원이 지는 책임 이외에 다른 효과는 없다. 만약 친척이 없는 한사람이 살인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면 그는 보상도 없이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드의 조합원이 이왕 가지고 있는 몫과 같은 인명금을 가진다. Aelfred왕(약 880-900년)의 법률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⁶⁸⁾ :

만약 父系의 친족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 사람이 싸움을 하면서 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그리고 만약 그가 母系의 친족이 있는 때에는 후자는 삼분의 일의 인명금을, 그리고 길드의 조합원은 다른 삼분의 일을, 그리고 마지막 삼분의 일은 그가 지급해야만 한다.

67) Abt. 21-23, 30(Liebermann I, S.4f.). 여기서 우리는 주로 Eckhardt, S.17의 번역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Gesippen"(für magas) 대신에 "Verwandte"를 사용하였다. Liebermann은 대체로 Sippe를 이용하였으며, 번역하였다. 예를 들면 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는 살해된자의 씨족에 간접 인명금을 지불한다.(Wenn einer jemanden erschlägt, büße er (an dessen Sippe) mittleres Wergeld).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는, B. S. Phillpotts, S.205f.를 참조할 것.

68) Af. 27-28(Liebermann I, S.66) ; dazu B. S. Phillpotts, S.211f.

만약 그가 모계 친척도 없다면, 길드의 조합원이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절반은 그가 담당한다.

만약 사람이 친척이 없는 한사람을 살해했다면, 살해자는 인명금 절반을 왕에게, 그리고 절반은 길드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살해자가 국외로 도망을 한 때에도 이러한 책임은 발생한다. 즉 이러한 경우에 친족들은 길드의 조합원들과 함께, 혹은 친족 혼자서 인명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비록 Liebermann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씨족(Sippe)”으로서 해석하였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러한 견해가 친족의 일차적인 책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씨족의 단체에 관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앵글로색슨법의 용어사용법을 따른다면, 그러면 이미 언급한 친족들은 단지 가장 가까운 가족구성원들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Eltern), 남매(Geschwister)와 자식(Kinder), 그리고 그밖의 부친의 형제(Vatersbruder)들을 의미한다.⁶⁹⁾

아마 사람들은 게르만의 길드는 종교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제도로 존재할 수 있고,⁷⁰⁾ 또한 그것은 씨족의 지위에도 이전되어지며,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에 史料(Quelle)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최초의 자리를 종족단체에 승인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가 결정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규정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약 200년경의 오래된 비교가 있었다. 이것은 690년에 성립된 Ine von Wessex왕의 법률 속에서 존재했다⁷¹⁾:

만약 한 살해당한 자가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인명금 절반은 왕에게 귀속되고

69) 앞의 주34번.

70) 이것은 게르만의 보호단체들(Schutzgilden)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이다.; vgl. 예를 들면 v. Amira, Grundriß, S.186. 혹은 최근에는, H. Planitz, Die Deutsche Stadt im Mittelalter, 1954, S.77f.: “길드는 하나의 인공적인 씨족단체였다”(Die Gilde war eine künstliche Sippe).

71) Ine 23, 1(Liebermann I, S.98).

나머지 절반은 살해된 자의 주인에게 귀속된다.

길드조합원들은 후에 어떠한 지위를 가졌는가에 대해 여기서 살펴보았다. 즉 그것은 친족이 아니라, 그들의 지위를 보유한 支配權(Herrschaft)이다. 만약 사람들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살펴보면, 도처에서 길드의 형제들, 다른 동료들 혹은 주인이 지금까지의 독일법 이론에 의해 씨족에 귀속되는 기능들을 접하게 된다. 神判(Gotesurteil)에 의해 확정되어진 절도자를 그의 친족이나 주인들은 처형으로부터 몸값을 주고 구출할 수 있다.⁷²⁾ 또한 친족뿐만 아니라, 동료나 주인도 訴追된 자를 위한 保證할 수 있다.⁷³⁾ 한 법률은 절도소송의 경우에 주인을 보증인으로 간주한 것도 있다: 즉 사람들은 혐의자를 보증할 수 있는 그 주인이 도착할 때까지는 확정하여야만 한다.⁷⁴⁾ 만약 주인이 그의 사람을 방면해 주기 위한 선서를 원하는 때에도, 이것은 그것을 위해 한 번의 광범한 宣誓補助者(Eidhelfer)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權標宣誓(Stabeid)를 통해 그것을 혼자서 할 수 있었다.⁷⁵⁾ 따라서 친족이 없는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권리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혹은 그의 동료와 길드의 형제들이 친척관계가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그를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Liebermann이 씨족이 없는 사람(Sippenlose)의 개념하에 도입하기를 원하였던,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freundleas man)과는 아주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료(Quelle) 속에서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freundleas)은 “친척이 없다는 것”(ohne Verwandte)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친구들”(Freunden)을 통해서 라는 것이 “혈맹”(Blutsfreunde)을 의미하지 않는다.⁷⁶⁾ 오히려 의지할 곳이 없는 자는 동행자를 갖질 못한 자이다. - 따라서 同僚(Genosse), 宣誓兄弟(Schwurbruder), 種族의 構成員(Stammesgenossen), 同鄉人(Landleute), 戰友(Kriegskamerade), 同僚聖職者(Mitklerker)

72) VI As. 1,4(Liebermann I, S.174).

73) VI As. 9(Liebermann I, S.181).

74) E.CF.38, 1a(Liebermann I, S.668).

75) Hn. 66, 7(Liebermann I, S.586).

76) Vgl. Liebermann. Bd. II, S.81 s.v.freond.

등이 없는 것이다.⁷⁷⁾ 간단히 말해서 어느 누구를 알지 못하는 자이며, 또한 어느 누구도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대체로 오직 외국인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 법률들은 동시에 의지할 곳이 없는 자와 먼 곳으로부터 전입해온 자(*freundleasan and feorran cumenan*)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⁷⁸⁾ 그것을 라틴어로 *advena aut peregrinus, qui de longinquo*라고 칭한다.⁷⁹⁾ 이러한 사람은 확실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선서 보조자나 보증인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은 그에게 神判을 받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곳보다 완화하여 형벌이 과해지는 곳에서는 그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를 노예로 삼거나 살해되는 일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債務(*Schuld*)는 대체로 우선 형사피고인으로서 그러한 의지할 곳이 없는 자를 구인하는 판사가 빠뜨린 강제상태이었다. 판사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神判으로서 그에게 어떤 다른 방법이 남아있는 것인가? 그는 배상을 명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공취력(*Zugriff*)에 의해 행위자에 대해 그것을 강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의지할 곳이 없는 자의 불확실한 지위는 씨족을 가지지 못한 자로서 자신의 법률적인 지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부터, 아주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기인된 것이다.⁸⁰⁾ 그의 의지할 곳이 없는 성질(*Freundlosigkeit*)의 확립을 통해 그가 자신의 고향에서 한 주인이나, 동료 혹은 친족을 보유할 수 있는나의 여부에 관하여는

77) Vgl. Liebermann. Bd. II, S.651(Sippe, Nr.1c) und 91(gefera)-vor allem auf Grund von II Cn. 35,1.

78) II Cn. 35, 1(Liebermann I. S.336).

79) *Instituta Cnuti*(위의 각주에서 인용되어진 곳의 번역) ebd. S.337. Beyerle가, *Entwicklungsproblem*, S.557, Anm. 2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씨족을 가지지 못한 자들과 함께 외국인의 동등한 지위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 가상의 씨족을 가지지 못한 자는 외국인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80) 선서보조자의 瑕疵 혹은— 아직도 분명한 것이지만— 보증인은 신명재판에 대해 강제하기 위한, 누범의 경우에는 사형선고를 내리기 위한(VI As. 1, 4 : I Atr. 4,1=cn. 33,1), 노예화(VI As. 12,2) 혹은 추방을(E.Cf. 18b) 위하여, 그리고 재산몰수를 위한(II As. 20, 4=Hn. 53, 1c ; III Eg. 7,1=II Cm. 25a) 이유이다.

전혀 논의 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Aethelreds왕의 한 법전에서는 어느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자가 씨족이 있는 자와는 반대되는 위치에 있으며, 또한 씨족은 私鬪(Fehde)나, 선서보조(Eidhilfe), 벌금지급(Bußzahlung)의 의무를 진다고 명백히 규정하였었다. 만약 한 사제가 의지할 곳이 없다면 그는 神判을 통해 결백함을 밝혀야만 했다. 만약 살해한 사제가 기소된 때에, 그리고 즉 그가 살해자이거나 혹은 다른일을 모의한 때에는 그는 그와 함께 私鬪를 수행해야만 하거나 벌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의 친족과 함께 자유선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가 친족이 없는 경우는, 그는 같은 신분의 동료들과 자유선서를 하거나 혹은 神判을 통해 결백함을 증명하여야 한다.⁸¹⁾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 역시 씨족의 법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서는 공헌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친족들은 소위 성직자를 위해 인명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는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⁸²⁾ 따라서 그것은 친족의 보조적인 책임의 경우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친족이 없는 사람은 아직 조건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 만약 형사피고인이 친족이 없다면 그의 동료 사제가 그를 조력해 줄 수 있다. 비록 그가 아주 홀로 서 있다 하더라도, 그는 神判에 복종되어야만 한다. 의지할 곳이 없는 자를 씨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고대의 이론은 사료를 통해 보여주어야만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지위 중의 하나는 용어의 번역 가운데서 인용된다.⁸³⁾

만약 의지할 곳이 없는 계단을 관리하는 직분자가 선서보조자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는 해결해야 하는 것들의 神判을 착수하였다...

81) VIII Atr.22-24.

82) Af. 21: 사제의 우두머리도 그것 대신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 사제에 대해서도 배상의무 자체가 간과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는 단지 그상황하에 격리될 뿐이다.

83) VIII Atr. 22(Liebermann I, S.266). Liebermann의 경우에 이러한 보충들은 공통적인 것이었다.

Liebermann의 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만약 친구(와 씨족을 보유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선서보조자도 없는 제단을 관리하는 직분자가 기소되어진 경우에는, 그는 해결해야 하는 것들의 神判을 착수하였다(Wenn ein Altardiener, der keine Freunde (und Sippe und daher) keine Eidhilfe besitzt, mit Anklage belegt wird, so schreite er zum Gottesurteil des Entscheidungs-bissens...).

사람들은 “씨족”과 그 근거가 되는 “그 때문에”(daher)라는 말은 단순히 부가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 말들은 사료의 문장 속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저자의 학문적인 검증에 의한 것이다. 법률 그 자체는 씨족의 無存在性(Sippelosigkeit)을 통해서가 아니라, 被告人이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神判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바로 여기서 *advenna aut peregrinus*에 관한 라틴어의 번역이 나타난다.⁸⁴⁾ 그래서 친구가 없는 자(Freundlose)는 실제로 평화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단순히 친족이 없는 사람은 훨씬 좋은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동료와 길드의 형제, 그리고 그의 주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그들은 모두다 그를 위해(訴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법리의 씨족이 없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⁸⁵⁾ 씨족이나,

84) Inst. Cnuti zu I Cn 5, 2a(Liebermann I, S. 287). 이에 반하여 이 번역은 *maegleas*의 지위를 인용하였다.(I Cn. 5,2c) : Si non habet parentes...따라서 친구가 없는 자로부터 친족없는 자와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 !

85) 씨족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두 가지의 가능성, 즉 씨족의 탈퇴(Entsippung)와 씨족의 축출(Preisgabe)이 우리에게 앵글로색슨법에 있어서는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씨족과 함께 Pact.에 관한 해석은 L.Sal.60(*qui se de parentilla tollere vult*)에서 너무 성급한 것일 수 있다. Hn.88, 13에서 영국적인 인용의 경우에는 그것이 다르지 않다. -이것이 영국에도 대체로 유효한 경우이다.(*ablehnend Pollock-Maitland, The History of English Law, Bd.I, S.32*). 씨족의 탈퇴이론에 대하여는 Marco Scovazzi, *Le origini del Dritto Germanico I*. 1957. S.272ff. 그는 대체로 광범하게 전통적인 이론을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Rehfeldt의 비판은 이 잡지, Bd. 76, 1959, S.353ff.를 참조할 것. 그는 씨족의 탈퇴를 근거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평화와 법에 대한 몫(Teilhabe)을 조종할 수 있는 종족단체(Geschlechtverband)가 앵글로색슨의 사료들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씨족의 법리가 앵글로색슨법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영국의 학계는 이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⁸⁶⁾ 독일법사로부터 결정적으로 시사를 받은 Frederick William Maitland와 같은 학식가는 씨족의 법리를 부정하였다.⁸⁷⁾ 그는 앵글로색슨인들의 경우에는 중심이 父系로서 구성되어지고, 공동으로 정주하며, 그들의 구성원이 私鬪의 경우나 재판을 받을 때 서로 지지하는 씨족의 단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Andreas Heusler와 유사하게 오직 개별적인 친족은 인정하였으나, 포괄적이며 법률적인 단체로서는 인정하지 않았다.⁸⁸⁾ 원래 이러한 영국의 견해는 독일법사의 교과서들이 오랫동안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Bertha Surtees Phillpotts에 의해 기초되어졌다.⁸⁹⁾ 다른 게르만의 법률들 속에서 Phillpotts양은 사람들이 “씨족” 대신에, 아주 간단하게 “친족”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그녀의 견해를 확립하였다.⁹⁰⁾ 만약

86) J. M. Kemble, Die Sachsen in England, übers.v. Brandes, Bd.I, 1853, S.189ff., 212ff. 그는 독일의 이론과 매우 가까운 것이었으며, 그러나 가족의 보증(Familienbürgerschaft)을 국가활동의 증거로서 간주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K. Maurer(주 48)에 대해 반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87) Pollock-Maitland, Bd.I, S.31f., Bd.II, S.240ff.

88) Bd. II, S.244.

89) 이 책은 Cl. Frh. v.Schwerin에 의해 평가되어졌다. 그 서평은, in : ZRG. Germ. Abt. 35, 1914, S.477ff. ; 그러나 필자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곳을 접하지 못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Phillpotts嬢에 의해 자세히 기술되어진 이 견해들은 새로운 것이 이니다라고 하는 영국에서는(vgl. Pollock-Maitland), 오늘날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표현으로서 유효하다. 예를 들면 R. H. Hodgkin, A History of the Anglo-Saxons, Bd. I, 1935, S. 212ff.을 참조할 것.

90)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는 전체적인 게르만법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거나 설명되어질 수는 없다. 이것은 그것과 관련된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계되는 부분들은 앞의 주 29번 33번 36번 38번 41번 81번에서 언급되어졌다. 이밖에도, H. Kuhn은 이미 in : Germanische Altertumskunde, 1938, bes. S.202f.에서 여기서 대표되는 견해와 아주 가까운 총체적인 견해를 고안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바른 것이라면, 이것을 통해 게르만의 제도상태(Verfassungszustand)들과 관한 우리들의 사고(Bild)에는 큰 결점이 생기는 것이다. 법과 평화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전달자가 사라진 것이다. 무엇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가? 우리들은 다시 한번 앵글로색슨의 법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 법률들은 개개의 지시를 구성원이 이미 전부터 특별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공동체관계의 관련 속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을 가리켰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외에 성립하고, 대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배권(Herrschaft)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체로 앵글로색슨의 法源(Rechtsquelle)들이 개개인은 누구나 하나의 주인하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절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주인 혹은 상사들이 神判에 앞서 그 자신의 선서를 통해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은 주인 혹은 자신의 상사(Amtman)에 의해서만 기대 되어져야 한다.⁹¹⁾ 그의 고향이나 그의 친족들로부터 이주한 자는 그 곳에서 지배권을 발생시킴이 없이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⁹²⁾ 다른 지역으로 혼인하는 개개의 약혼녀는 한 주인의 땅으로부터 다른 주인의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다.⁹³⁾ 한 주인에 대한 구속은 친족과의 공동체적인 감정보다도 훨씬 강력한 것이다. 암초도(Scharen)에서 친척들이 서로 대립하였던 두 왕의 비극적인 전투를 묘사하는 경우에 앵글로색슨의 연대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친적이 없는 자가 주인보다 좋다”(Kein Verwandter ist lieber denn der Herr).⁹⁴⁾ 씨족에 관한 법리를 통하여 그러한 책임은 대체로 일치되어진다. 비록 어떤 사람이 친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한 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Aethelstan왕의 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명하고 있다⁹⁵⁾:

우리는 친족들이 주인이 없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부여해주며, 사람들이 그 친족을

91) I Atr. 1, 2(Liebermann I, S.216).

92) II As. 8(Liebermann I, S.154).

93) Wif. 7(Liebermann I, S.442).

94) Ann. Agsax.a.755(Liebermann, Bd. II, S.426 s.v.Gefolge, Nr.15d). Dazu B. S. Phillpotts, S.237.

95) II As. 2(Liebermann I, S.150); dazu Pollock-Maitland, Bd.I, S.30)

존경하는 것을 그들에게 그 권리의 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주인없는 사람들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친척들은 국민회의에서 그에게 한 주인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종류의 규정은 하나의 씨족이 존재했을 때에는 확실히 과도한 것이다. 그들의 氏族群(Gesippen)을 하나의 주인하에 두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씨족—그것은 아주 불합리한 생각일 것이다. 그와 반대로 지배권의 의미는 그것이 공적인 재판의 의무를 깨뜨리고, 신분적인 지위를 상대화시키는 것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미 Eadgar의 왕치하에 그 사람이 公示催告 때문에 그의 주인에 의해서 재판일정을 늦추어, 벌과금을 지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⁹⁶⁾ 수십년 후에 많은 주인들이 존재해 있었음이 보고되어졌다.

주인이, 그가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원할 때에, 그의 사람을, 주인이 그의 사람을 보다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때, 그의 사람을 두 사람에 관한 즉 혹은 자유인으로서 혹은 종으로서 司法上 대리한다(der, wenn er kann und darf, seinen Mann, je wie es ihm dünkt, daß er ihn bequemer verteidigen könne, als eines von beiden gerichtlich vertrets, nämlich bald als Freien, bald als Knecht).⁹⁷⁾

따라서 가장 중요한 법률상의 지위는 공개적으로 종속성(Zugehörigkeit)을 통하여 한 주인에게 조정되어진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이미 Aethelan왕의 제위시에 이미 한 주인이 그의 사람들이 어떠한 피고인으로 기소되어진 때에, 그리고 먼저 그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 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⁹⁸⁾ 이러한 제명(Verstoßung)은 확실히 친족이 없는 경우보다도 심각한 것이었다. 친족이 없는 자가 아닌, 그러나 대부분 주인이 없는 자는 쉽게 의지할 곳이 없는 자가 될 수가

96) Hu. 7, 1(Liebermann I, S.194).

97) II Cn. 20,1(Liebermann I, S.322ff).

98) II As. 22, 2(Liebermann I, S.162).

있다. 16세기에 영국에서는 멀리받고 있는 유랑인들과 범죄자(Vagabunden und Verbrecher)를 “無籍者들”(masterless men)로 칭하였다.⁹⁹⁾ 이러한 지배권의 포괄적이고 중요한 의미는—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다.—우선 오랜 발전과정 속에서 형성해온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의 핵심 속에는 Ines von Wessex왕의 법률이 보여 주었던 것과 같이,¹⁰⁰⁾ 이미 앵글로색슨의 시대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지배권에 관한 순수한 신화(Mythos)가 씨족의 신화의 지위로 유입되어서는 안되는 때에, 결국 최소한 이 지배권의 구조와 뿌리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야만 한다. 다시 사료들 자체가 우선적으로 암시를 해주고 있다. 그것들은 주인을 “hlaforð”(로 불렀다), 따라서 (주인을) “빵의 감독자(Brotwart), 빵의 주인”(使用者: Brotherr)이라 칭하였다. 이것은 오늘날의 귀족(Lord)이라는 말에서 연유된 것이다. 따라서 지배권은 결국 家의 支配權(Hausherrschaft)으로 간주되어 진다¹⁰¹⁾ 즉 비록 그것이 오래 전부터 貴族支配權(Adelsherrschaft) 혹은 領主支配權(Grundherrschaft)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의 한 사람은 주인의 家族共同體(familia)에 귀속된다. 또한 앵글로색슨의 베오울프(Beowulf)의 영웅서사가 입체적으로 그것을 잘 묘사해주는 바와 같이, 특정의 한 사람이 주인의 식탁에서 그의 빵을 먹는다는 起源關係(Ursprungsverhältnis)로서도 간주되어질 수 있다. 그 범위가 종결되어졌다: 지배권에 관하여 우리들은 다시 가족으로 귀결되어진다. 그러나 가족은 더 이상 큰 씨족단체로서가 아니라

99) Liebermann II, S.425 s.v. Gefolge, Nr.9d.

100) 앞의 주 71번. 우리는 오늘날 게르만인의 경우에 지배권이 일반적으로 분배되어진다는 새로운 평가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앵글로색슨인들의 경우에 지배적인 제도들에 대한 오래된 확고한 논의에 대해서는 유보되어질 수 있다. Vgl. schon Pollock-Maitland, Bd. I, S.30, und jetzt Dannenbauer, Adel, Burg und Herrschaft, a.a.O., 124ff.

101) 결국 家의 支配權(Hausherrschaft) 종사지배권(Gefolgsherrschaft) 역시 성장한 것이다. vgl. Schlesinger, Herrschaft und Gefolgschaft, a.a.O., S.151f. Liebermann이 그 자신의 “Gesetzen der Angelsachsen”에 대한 사물의 어휘 속에서 단순한 지배권을 종사지배권으로서 이해를 할 때, 이 제도의 기원이 그것을 통해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다.

家の庇護下에 성스러운 석탄으로 불을 지피는 아궁이를 지키는 밀접한 공동체로서 나타났다. 家가 중세의 지배형태의 근저를 얼마 광범하게 표현해주는가의 문제는 여기서 바로 다시 제기되어 질 수 있다: 그의 답변은 이 글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